



개인정보보호지원센터 기술지원팀



## 개인정보보호, 기초부터 하자

최근 2~3년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5월말 KISA가 조사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3.7%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알고 있고 있으며, 98.8%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는 얼마나 진행되고 있을까. 그 대답을 듣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지원센터 기술지원팀을 찾았다.

글·사진 정보보호뉴스 취재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은 법제도와 기술적 예방 및 보호조치로 구분된다. 하지만 최근 금융기관을 비롯해 온라인 쇼핑몰, 통신사업자 등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게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고, 특히 유출사고 이후 이어진

법정 분쟁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률적 논의가 주된 화두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법적인 측면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역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KISA 개인정보보호지원센터 기술지원팀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업의 기술적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

색하고 이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다.

### 보안서버 보급률 보안수준의 척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업에 대한 기술적 조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다양할 수 있지만, SSL 통신을 위한 보안서버

“보안서버 보급은 개인정보보호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해요. 최소한 올해까지 약 27,000개의 사이트에 보안서버의 보급이 완료된다면, 국내의 개인정보보호 수준도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지원센터 기술지원팀 김진원 팀장은 보안서버 보급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민간 기업 및 기관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덧붙인다.



운영이나 개인정보 관리방안 마련 등은 가장 기초적인 요소로 손꼽힌다.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보안서버 보급을 추세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들의 인식은 미흡한 것 같아요.” 개인정보보호지원센터 기술지원팀 김진원 팀장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률적 논의는 활발한 반면, 각 기업의 기술적 조치는 미흡한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지난 2006년 WEF(World Economic Forum)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국내 보안서버 보급률은 타 OECD 국가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안서버 보급률을 높이는 것은 기술지원팀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다. “국내에는 약 100만개의 웹 사이트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그중 약 60%의 사이트가 국내 IP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개인정보를 일정 규모이상 수집하고 있는 약 5~6만개의 사이트를 제도 대상으로 삼아, 보안서버를 보급시키고 있죠.”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보안서버 보급은 지난해 15,000여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후, 올해에는 그보다 2배 가량 확대된 27,000여개의 사이트를 대상으로 중점 홍보할 계획이라고 한다. 물론 이는 결코 적지 않은 수치. “1년

넘게 지나온 시간동안 보안서버 보급률은 이전에 비해 상당히 높아져 있어요. 하지만 보안서버에 대한 관심은 물론,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큰 문제라고 봐요”라는 김 팀장. 그러면서도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올해 목표 수치는 반드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 i-PIN 관심, 이제부터

보안서버 보급과 함께 기술지원팀의 또 다른 관심 대상에는 주민번호대체수단인 i-PIN 활성화가 포함돼 있다. 유출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중 하나로 등장한 i-PIN은 현재까지 130여개 사이트에 보급돼 21만건이 발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향후에는 정보통신방법을 통해 법적으로 대체수단 사용을 의무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i-PIN의 보급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한편으로, i-PIN 보급은 기존의 개인정보 수집 관행을 바꾼다는 의미에서 각 기업에서의 수용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개인의 주민번호는 고유하고 또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개인정보 수

집항목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로 주민번호 대체수단이 등장한 것이죠. 현 상황은 대체수단이 주민번호를 대신하는 과도기에 있다고 봐요. 때문에 금융거래 등에서 대체수단을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빠른 시일 내 기술적 요소는 물론, 법적인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김 팀장은 주민번호 대체수단이 본인확인을 위한 일반 사용자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인다.

현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은 사이버 공간에서 유통되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숫자 즉,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등과 같은 부분에 관심이 모아져 있지만, 향후에는 영상, 위치 등 개인정보의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될 것이다. 또 그에 따라 법률을 통해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법적 토대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 있다. 법률이 요구하는 보호조치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물론 그 해답은 기술지원팀이 풀어줄 수 있을 것이다. **S**